



보도시점

2026. 4. 5.(일) 11:00
4. 6.(월) 조간

배포

2025. 4. 3.(금) 16:00

농업경영에 도움되는 정보를 한눈에...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 발간

- 놓치기 쉬운 농업 분야 세제 제도, 고용보험까지 필수 정보 총정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4월 1일, 농업인이 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농업 분야 세제 제도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경영위기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고용보험까지 다양한 정보가 폭넓게 담겼다.

먼저, 책자에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농업의 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제도를 그림과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하면서, 농어가목돈 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때 양도소득세 면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대한 낮은 재산세 세율(0.07%)*, 농업을 가업으로 이어가고 있는 농업인 대상 30억원 한도 상속세 공제, 자경 농민이 직접 농업에 사용하는 농지·축사·온실 등의 취득세 50% 경감 등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감면제도들을 소개했다.

* 일반토지는 0.2%~(누진세율 적용)

최근, 농산물을 온오프라인에 판매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농업인이 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농업인들이 통신판매업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농산물 판매 수입에 대한 비과세 혜택(10억 이하까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책자에서는 농업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작물재배업과 통신판매업을 모두 등록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기존에 통신판매업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작물재배업을 추가하면 불필요한 세금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알렸다.

* 농업 분야 사업자등록 현황(국세통계포털): ('22년) 70천명 → ('23년) 76천명 → ('24년) 83천명

또한, 책자에는 농업용 파이프, 포장상자, 과일봉지 등 69종의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설명하면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기자재를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농업인이 신용카드로 해당 농기자재를 구매하는 경우라도 판매자에게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부가세 환급을 놓치지 말라고 안내하였다.

'24년 7월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가입 요건, 구직급여 지급조건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제 농업인 가입자 수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본인에게 적합한 보험료를 선택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방정부로부터 보험금 일부를 지원받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혹시 모를 경영 위기*시에 구직급여와 함께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원받는 등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년 대비 매출액 20% 감소, 건강 악화, 자연 재해, FTA 폐업지원, 동·식물방역, 농업재해 등 비자발적 폐업(폐업신고서, 매출·비용 증빙을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제출 필요)

농식품부 윤원섭 농업정책관은 “제11판으로 인쇄되는 금번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에는 농업인들이 알아야 하는 세금 이야기와 함께 농업분야 주요 세무 이슈와 이에 대응하는 방법, 더불어 자영업자로서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 속 농업분야 주요 조세감면 제도 1부.

2. 농업인(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서 1부. 끝.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실 농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혜영 (044-201-1711)
		담당자	연구관	이부자 (044-201-1723)

제 1

「2026 농업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 속 농업분야 주요 조세감면 제도

구분	감 면 내 용	감면 시한
소득세	농가부업소득(축산 등), 전통주 제조소득, 전답 임대소득,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	계속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제외	계속
	농공단지 입주기업 소득세 감면	'28년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26년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배당소득 비과세	'26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28년
	농협 조합원 등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28년
양도 소득세	농업법인에 농업인이 농지 및 초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26년
	8년 이상(경영이양직불대상 농지의 경우 3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계속 (26년)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28년
	농지 대토시 양도소득세 감면	계속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28년
법인세	중소기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28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28년
	영농조합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26년
	농업회사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26년
	농협중앙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계속
상속세 · 증여세	영농상속공제(30억원 한도)	계속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28년
인지세	농어업인의 용자, 예금에 따른 인지세 면제	'26년
	농어촌 정비사업등과 관련한 재산권 이전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26년
부가 가치세	농수산물·미가공 식료품에 대한 면제	계속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속,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8년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계속
	농업법인의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6년
	정부업무대행단체(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공사, 한국농어촌 공사)가 고유목적 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계속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기자재·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8년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28년

구분	감면내용	감면시한
농특세	농업인의 농지 등에 대한 국세·지방세 면제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계속
	농협에 대한 국세·지방세 면제시 농어촌특별세 면제	계속
	농업법인에 대한 국세·지방세 면제시 농어촌특별세 면제	계속
주세	전통주에 대한 주세 저율과세	계속
재산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유통·가공용 부동산 재산세 50%경감	'26년
	농어촌공사가 정부 대행사업으로 취득·소유하는 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28년 '27년
	농협중앙회 농어민교육시설용, 농협경제지구 구매·판매 사업용 등 부동산 취득·소유시 재산세 25% 경감	'26년
	농협 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재산세 면제	'26년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교육훈련시설 재산세 50% 경감	'28년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재산세 면제	'28년
취득세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50% 경감	'26년
	자경농민 농업시설(고정식 온실 등) 취득세 50% 경감	'26년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27년
	농업용 농기계류·관정시설 취득세 면제	'26년
	농지(임야)확대개발을 위한 농지(임야) 취득세 면제	'28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등기일로 2년 이내(청년농업법인의 경우 4년)에 영농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26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 50%경감	'26년
	농어촌공사가 정부대행사업으로 취득·소유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28년
	농협중앙회 농어민교육시설용, 농협경제지구 구매·판매 사업용 등 부동산 취득·소유시 취득세 25% 경감	'26년
	농협 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26년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교육훈련시설 취득세 50% 경감	'28년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28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27년	
등록면허세	농협조합 및 그 중앙회 용자 시 담보물 등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26년
	조합 합병시 재산권 이전등기 등록면허세 50% 경감	'27년
주민세	영농, 가축사육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 면제	'27년



가입 대상

- 근로자가 50인 미만이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을 보유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중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법」상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 (소규모공사, 가사서비스업 등)과 부동산임대업자는 가입 제외
 - 만 65세 이후에 자영업업을 개시한 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total.comwel.or.kr 에서 신청
 -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신청서 제출

기준보수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본인이 선택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2%)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 × 60%
 -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를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기준보수에 따른 월 보험료 및 월 구직급여 (단위: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구직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보험료 납부

- 매월 부과된 고용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
 - [내용] 최대 5년간 1~2등급은 고용보험료의 80%, 3~4등급은 60% 지원, 5~7등급은 50% 지원
 - [절차]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
 - * 지자체별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사업장 소재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도 중복수혜 가능

구직급여

- 지급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전년대비 매출액 20%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 FTA 폐업지원 농업인, 동식물방역, 농업 재해 등의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
 - * 신청 시 폐업신고서, 폐업 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매출·비용 총명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를 제출해야 함
 -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 항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폐업, 자기 사정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지급수준 및 기간

기초일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0일~210일까지 지급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신청절차

- 폐업 후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

직업능력개발 지원

지원대상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지원수준	<p>[훈련비] 1인당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 훈련비 지급 * 국가직종 훈련과정,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과정,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훈련과정은 1회 한하여 훈련비 전액 지원 * 기본 300만 원 지원+ 취업취약계층 등 200만 원 추가지원 *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자부담 차등 부과(0~55%)</p> <p>[훈련장려금] 총 140시간 훈련과정 수강 시 1일 5시간 미만은 9천 원, 5시간 이상은 18천 원 지원(단위기간 80% 이상 출석 시)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p>
신청방법	<p>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www.work24.go.kr)로 신청</p> <p>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온라인(고용24) 오프라인(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지원내용, 세부훈련과정 정보 등 확인 가능</p>